

국내 항공법

7주차

한서대학교

교수 최연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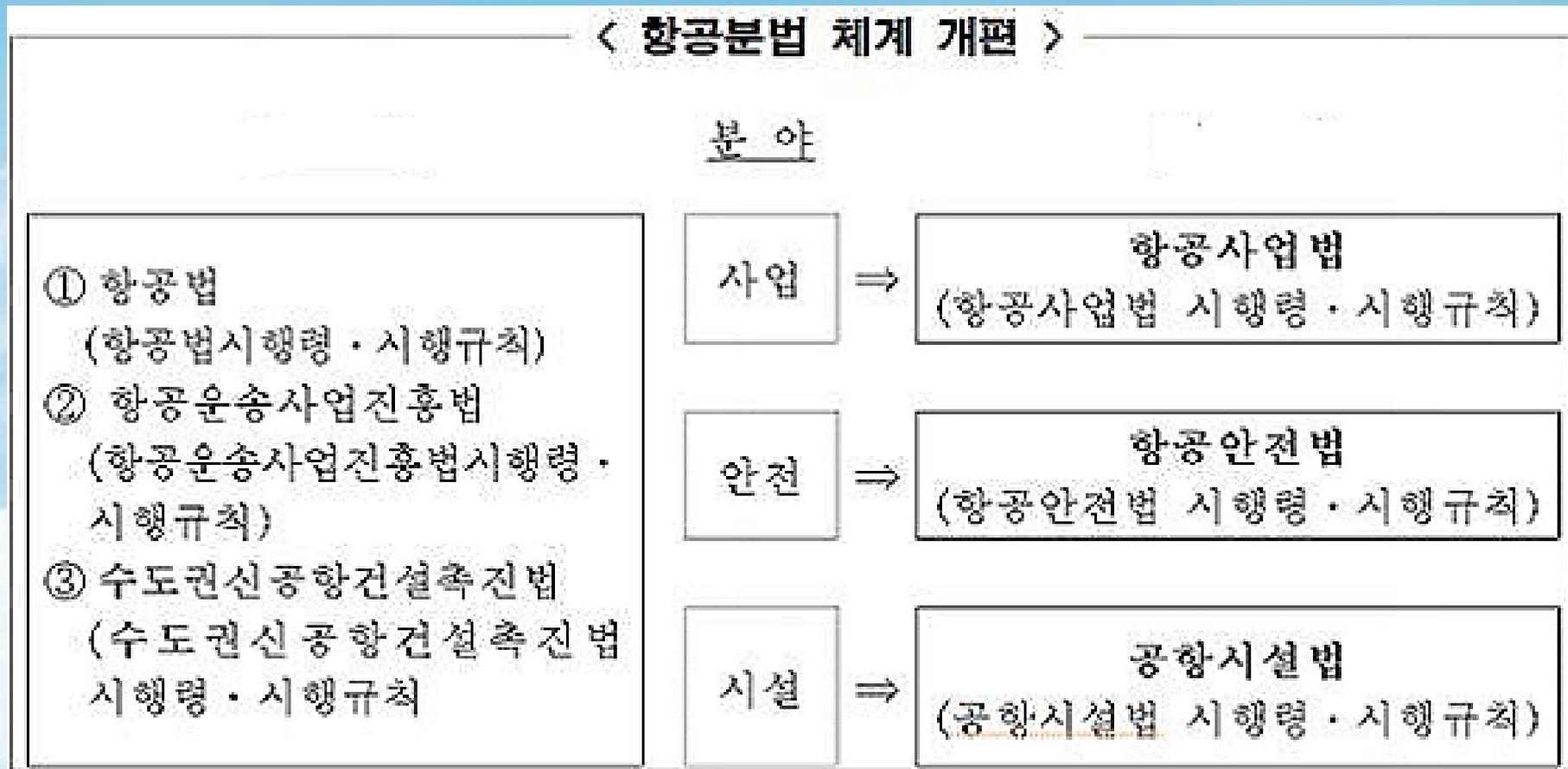
개 요

□ 본 강의는 항공법의 이해와 적용을 위한 기본내용 중심으로 진행됨

강의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법 체계와 역사 이해- 항공법 종류와 분류(항공 분법)- 항공법과 시행규칙, 시행령 이해
강좌개발 계획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법의 체계와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항공법의 학습 방향을 제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용어와 활용을 이해가 용이토록 설명- 실제 항공업무와 종사자 시험에 응용되는 항공법을 학습

항공법의 발전

□ 항공법 분법



항공안전법
[시행 2019.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정]

본문 | 제정·개정이유 | 별표·서식 | 연혁 | 3단비교 | 신구법비교 | 법령체계도 | 법령비교

조문선택 | 법령주소복사 | 화면내검색

본문

-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 제2조 정의
 - ▶ 제3조 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 ▶ 제4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 ▶ 제5조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 ▶ 제6조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 ▣ 제2장 항공기 등록
 - ▶ 제7조 항공기 등록
 - ▶ 제8조 항공기 국적의 취득
 - ▶ 제9조 항공기 소유권 등
 - ▶ 제10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 ▶ 제11조 항공기 등록사항
 - ▶ 제12조 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
 - ▶ 제13조 항공기 변경등록
 - ▶ 제14조 항공기 이전등록
 - ▶ 제15조 항공기 말소등록
 - ▶ 제16조 항공기 등록원부의 발
 - ▶ 제17조 항공기 등록기호표의

판례 | 연혁 | 위임규칙 | 규제

항공안전법

[시행 2019.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정]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한 방법을 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시행일 : 2020. 2. 28.] 제1조

항공안전법

[시행 2019.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제정]

☐ 본문

- ☐ 제1장 총칙
- ☐ 제2장 항공기 등록
- ☐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 ☐ 제4장 항공종사자 등
-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 ☐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 ☐ 제8장 외국항공기
- ☐ 제9장 경량항공기
- ☐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 ☐ 제11장 보칙
- ☐ 제12장 벌칙
- ☐ 부칙
- ☐ 별표/서식

☐ <http://law.go.kr/lstmdInfoP.do?lsiSeq=192947>

□ 항공안전법

- 법률 제14116호
- 시행: 2017. 3. 30., 제정: 2016.3.29.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주무관청
- ✓ 항공사업법
- ✓ 항공안전법
- ✓ 공항시설법

④ 항공정책실

* 항공정책관

- 항공정책과
- 첨단항공과
- 국제항공과
- 항공산업과
- 항공보안과

* 항공안전정책관

- 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운항과
- 항공기술과
- 항공교통과

* 공항항행정책관

- 공항정책과
- 신공항기획과
- 공항안전환경과
- 항행시설과

▶ 항공정책실

· 항공정책관

- 항공정책과
- 첨단항공과
- 국제항공과
- 항공산업과
- 항공보안과

· 항공안전정책관

- 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운항과
- 항공기술과
- 항공교통과

· 공항항행정책관

- 공항정책과
- 신공항기획과
- 공항안전환경과
- 항행시설과

항공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공항운영 및 활성화

무인비행장치 관련 안전 관리 운영 등 총괄

항공협정 체결, 개정 및 운수권 배분, 항공자유화

항공사업, 항공물류 및 항공보안 등

항공사고예방 정책 수립 및 항공사 안전 지도

형식승인, 감항증명 등 항공기 안전성 확보

국가공역관리, 항공관제운영 및 항공전문 인력 양성 등

공항, 비행장 개발 계획 수립, 시설확충 및 주변지역 개발

공항 소음대책, 환경관리 및 공항인증, 안전관리, 점검

항행안전시설의 확충, 현대화 및 해외수출 지원 등

항공안전법 구성

1.1 제1장 총칙

1.2 제2장 항공기 등록

1.3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1.4 제4장 항공종사자 등

1.5 제5장 항공기의 운항

1.6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1.7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1.7.1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1.7.2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1.7.3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1.8 제8장 외국항공기

1.9 제9장 경량항공기

1.10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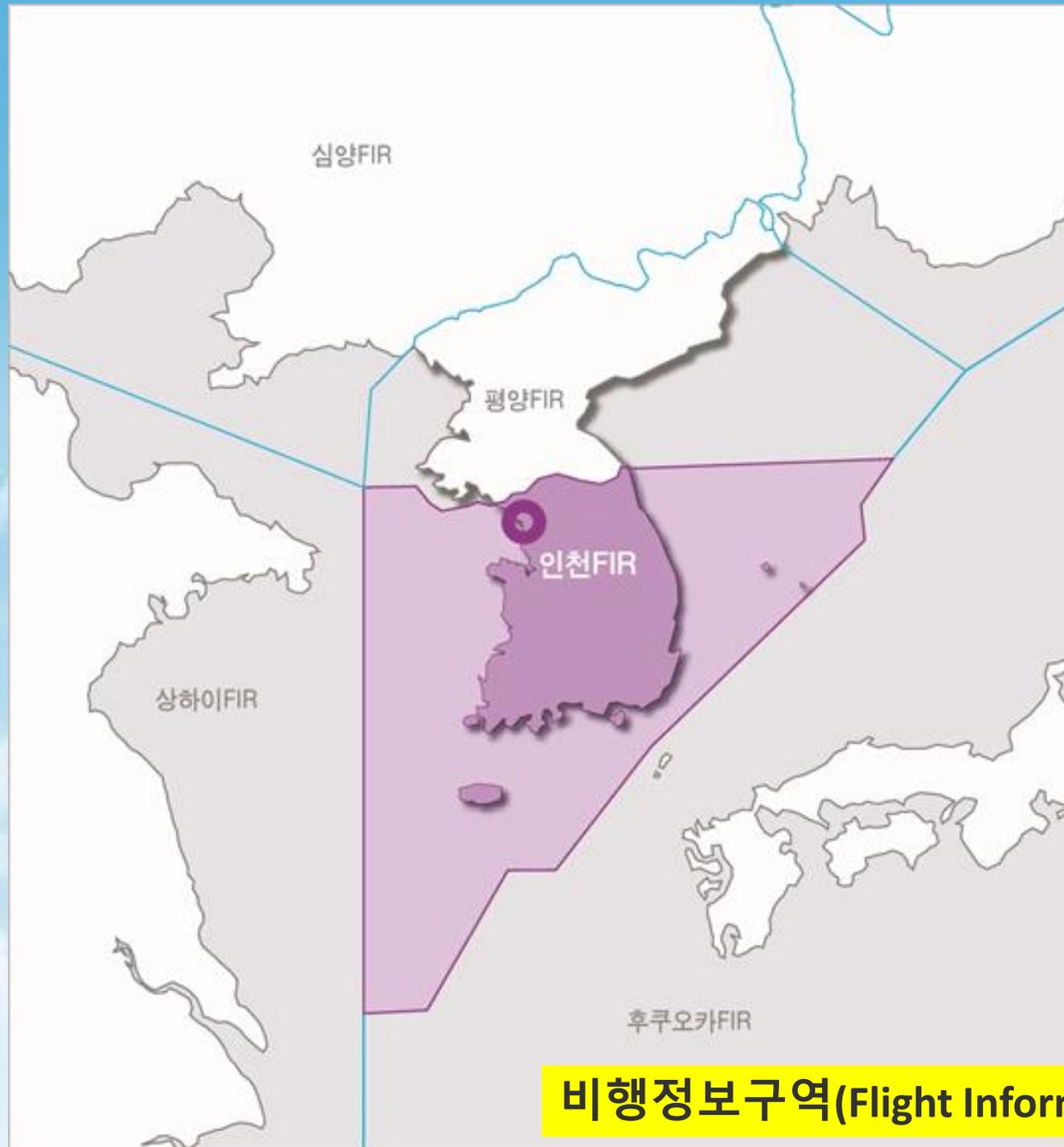
1.11 제11장 보칙

1.12 제12장 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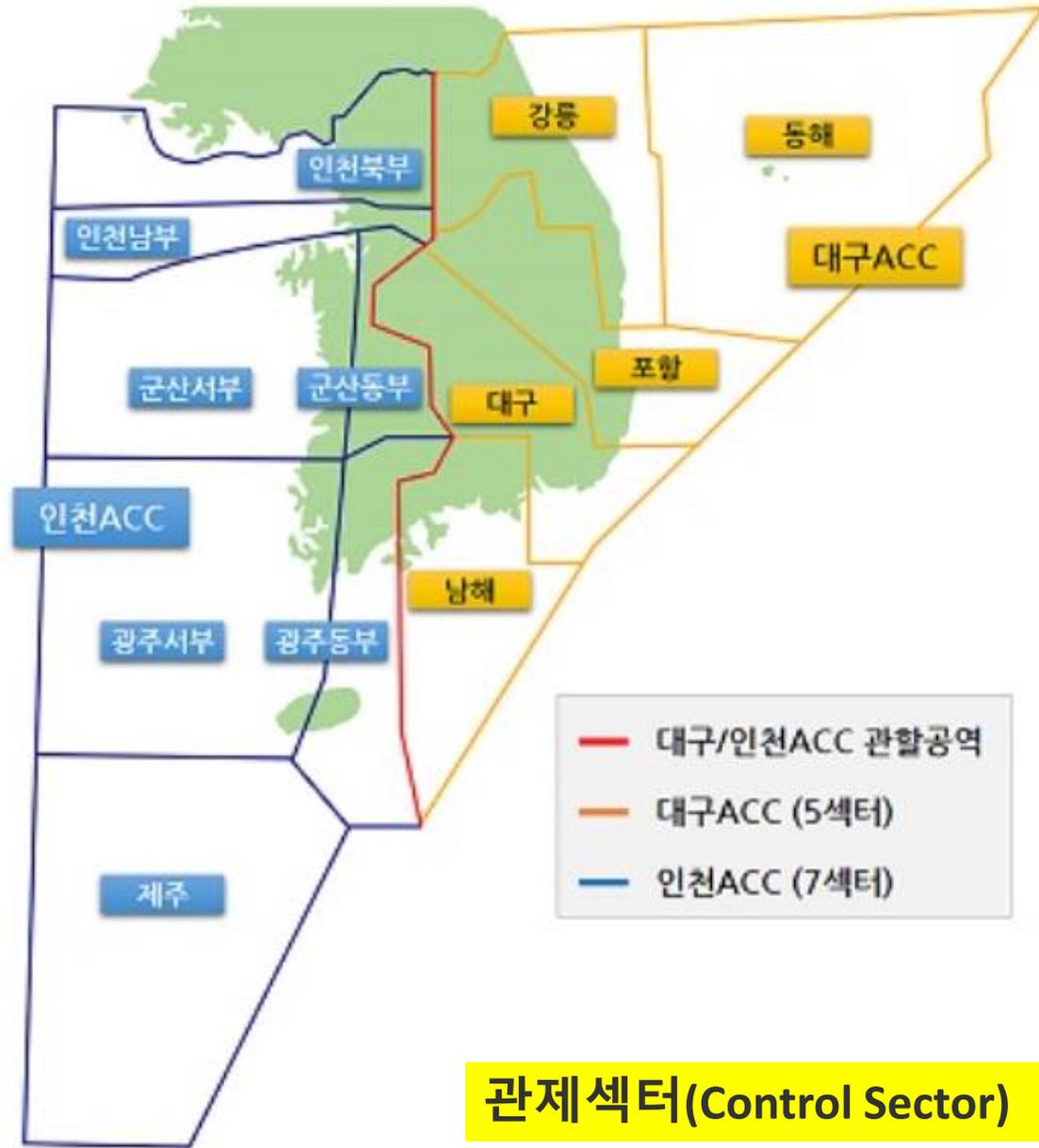
제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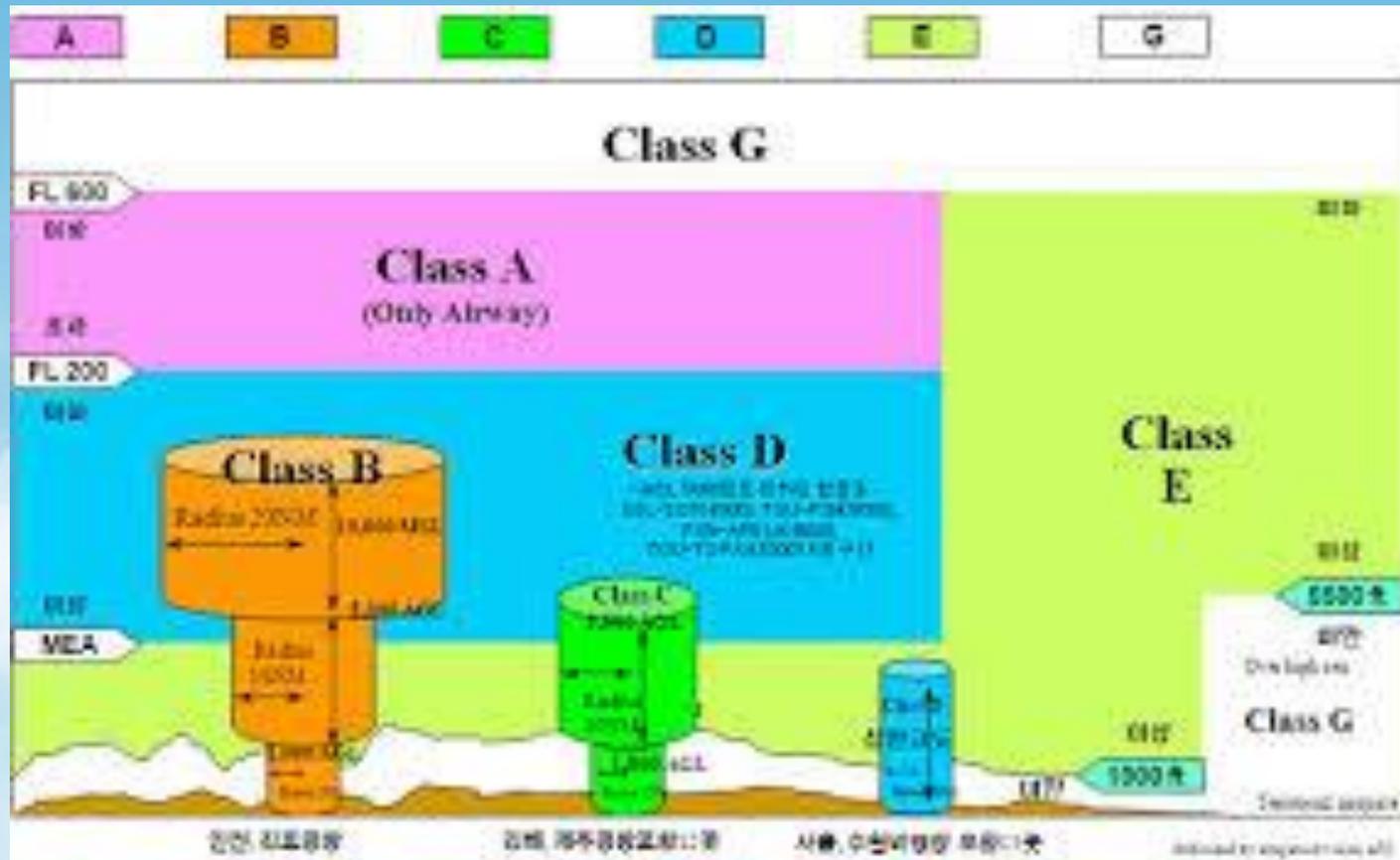
- ① 공역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 보구역을 다음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국토교통부장관)
 - 1. 관제공역: 항공교통 안전을 위해 비행순서·시기, 방법을 제84조제1항 (항공교통 관제 업무 지시 준수)에 따라 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자의 지시를 받는 공역 (관제권,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 공역, 조종사에게 비행 관련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
 - 3. 통제공역: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비행 금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 ②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공고
- ③ 공역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필요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관제섹터(Control Sector)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구역	A 등급 구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하여야 하는 구역
	B 등급 구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구역
	C 등급 구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비행정보만 제공되는 구역
	D 등급 구역	모든 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구역
	E 등급 구역	계기비행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구역
비관제구역	F 등급 구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구역
	G 등급 구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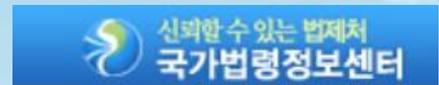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내용
관제 공역	관제권 	「항공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 공역	조연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Prohibited Area)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Restricted Area)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구분		내용
관제공역	관제권	관제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항공법 제2조제19호 이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관제구	항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 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 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관제구역	관제권			
				
	관제구			
비관제구역	비행장 교통구역	비관제구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구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구역
비관제구역	조언구역 정보구역	통제구역	비행금지구역 (Prohibited Area)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비행제한구역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 (Restricted Area)
통제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구역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 ① 비관제공역 (주의공역) 운항 : 공역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 방식 및 절차 준수
- ② 통제공역 비행 금지
 - 국토교통부장관 허가 : 공역의 비행 방식, 절차에 따라 비행 가능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 ① 공역 설정 및 관리(제78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역위원회 운영
- ② 공역위원회 구성·운영, 기능 등 필요사항(대통령령)

시행령

□제10조 (공역위원회 구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역위원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회 위원장은 항공업무 담당하는 고공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국토부장관이 지명, 부위원장은 제3항 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

1.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3급 국가공무원,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외교부 직위에 재직 외무공무원), 상응하는 계급장교 중 기관장 지명자 각 1명

2.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근거, 한국 주둔 미군장교 중 제1호 상응계급의 장교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항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조(국가안보를 고려)
 -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 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대통령령)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 전시(전시) 및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공역관리 :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 준수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받은 자)는 비행장, 공항, 관제권, 관제구에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에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제공
- ②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안전, 효율적 운항을 위해 비행장, 공항, 항행안전시설 운용 등 운항관련 조언(정보)을 조종사, 관련기관에 제공
- ③ 비행정보구역에서 수색·구조 필요 항공기(경량항공기) 관련정보를 조종사 (관련기관)에 제공
- ④ 규정에 따른 업무(항공교통업무) 제공영역, 대상, 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 ① 비행장, 공항, 관제권, 관제구에서 항공기를 이동·이륙·착륙,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업무증명받은 자)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 준수
- ② 비행장, 공항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운행, 비행장, 공항의 유지·보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지시 준수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 제공하려는 경우 : 항공교통업무 제공 체계를 갖추어 항공교통업무증명 획득
- ② 필요 인력·시설·장비, 항공교통업무규정 요건, 항공교통업무증명절차 등(기준) 고시
- ③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검사에 적합 인정 : 항공교통업무증명서 발급(국토부령)
- ④ 항공교통업무증명 획득: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유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준수
- ⑤ 항공교통업무제공 체계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에 신고 (규정 등 중요변경: 장관 승인)
- ⑥ 항공교통업무제공 체계 변경 : 신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준수를 명할 수 있음
- ⑦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 유지 여부 : 정기, 수시 검사(국토교통부장관)
- ⑧ 검사결과 항공교통안전 위험초래 사항 발견 : 시정조치 명 (국토교통부령)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 ① 항공교통업무증명 취소, 6개월 이내 항공교통업무 제공 정지 (국토부장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경우 (취소)
 - 2.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위반에 해당
 - 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미구비
 - 나. 미 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내용과 다르게 운용
 - 라. 미 승인 상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3. 항공교통업무증명위반: 항공교통업무제공 체계 미유지, 증명기준 미준수상태로 업무 제공
 - 4.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 위반: 미 신고, 미 승인에서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 변경
 - 5. 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 부적합 위반: 변경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준수 미 수행
 - 6. 항공교통안전 위험 초래 시정조치 명령 미 이행
 - 7. 고의, 중대과실로 항공기사고, 소속 항공종사자 관리·감독 주의의무등으로 항공기사고 발생
 - 8. 이 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취소)
- ② 처분 세부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①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 정지를 명하는 경우
 - 항공교통업무 제공 정지: 비행장 이용자 등에 심한 불편, 공익 해칠 우려
 -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을 갈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
- ② 과징금 부과에의 구체적 기준, 절차,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③ 과징금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 미납부, 국세 체납처분 시행 (국토부장관)

시행령

□제19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별표 2](#)

(단위: 천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6조제1항제2호	
1)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시작하기 까지 항공안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1,400
2)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안 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3,000
3) 항공안 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1,400
4) 승인을 받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1,400

제88조(수색·구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항공기 조난 경우 수색, 인명구조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에 계획을 수립·시행(국토교통부장관)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 ① 항공운항의 안전성·정규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항공정보)를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에게 제공(국토부장관)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공항, 관제권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보가 표시된 지도(항공지도)를 발간
- ③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정보, 항공지도 내용, 제공방법, 측정단위 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 시작하기 전까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 검사 후 운항증명 획득
- ② 운항하려는 항공로, 공항, 항공기 정비방법 등, 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운항증명서와 함께 항공운송사업자에 발급
- ③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 항공운송사업자 신청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변경
- ④ 항공운송사업자 (소속 항공종사자)는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
- ⑤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 시 안전운항체계를 유지
 - 노선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된 경우 : 실시하는 검사를 수용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계속

- ⑥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를 위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유지 여부를 정기, 수시 검사
- ⑦ 정기(수시)검사 중에 다음의 긴급조치 필요 시 항공기, 노선운항 정지, 항공종사자 업무 정지 명령 가능
 1.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발견
 2.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운항자격 등 해당업무 종사 필요요건 미 충족
 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칙 등 안전운항을 위한 이 법에서 정한 기준 미준수
 4.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
- ⑧ 제7항의 정지처분사유가 없어진 경우 지체없이 처분 취소(국토부장관)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①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의 경우는 운항증명 취소, 6개월 이내 기간 지정, 항공기 운항정지 명령(국토부장관)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 (취소)
 - 2. 국적·등록기호, 소유자 등의 성명, 명칭 미표시 상태 항공기 운항
 - 3.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운항
 - 4. 항공기 감항성유지를 위한 항공기, 장비품, 부품 정비에 관한 감항성개선, 검사·정비 등의 명령 미이행 상태에서 운항,항공기 등에 사용
 - 5. 소음기준적합증명, 항공기기술기준 부적합 항공기를 운항
 - 6.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한 요구 미 이행

구분	정의	사업체수
국내항공 운송사업	국내 정기편 운항 : 국내공항-국내공항 사이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국내 부정기편 운항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정기편 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	
국제항공 운송사업	국제 정기편 운항 :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9
	국제 부정기편 운항 :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 정기편 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	
소형항공 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	8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54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手荷物)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 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	39
항공기 정비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을 하는 사업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40
상업서류 송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우편법」 제1조의2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출입 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딸린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	660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를 이용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 체결을 대리(代理)[여권 또는 사증(査證)을 받는 절차의 대행은 제외한다]하는 사업	179
도심공항 터미널업	공항구역이 아닌 곳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1
항공기 대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여(貸與)하는 사업	9
항공 레저스포츠 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비행선, 활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종교육, 체험 및 경관조망,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99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	1,105
합 계		2,203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 운항증명 취소 등) 계속

①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경우는 운항증명 취소, 6개월 이내 기간 지정, 항공기 운항 정지 명령(국토부장관)

7.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

8.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

9.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부품을 항공기에 사용

10. 정비 항공기, 장비품, 부품의 감항성 미 확인 상태, 운항 또는 항공기에 사용

11. 자격증명 종류, 항공신체검사증명 기준에 부적합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

12. 무선설비를 미 설치 항공기, 설치 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한 항공기 운항

13. 항공기에 항공계기를 설치, 탑재치 않고 운항, 운용방법 등을 미 이행

14. 항공기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 미 탑재 운항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 운항증명 취소 등) 계속

- ①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경우는 운항증명 취소, 6개월 이내 기간 지정, 항공기 운항 정지 명령(국토부장관)
 - 15. 항공기 운항, 야간 비행장에 주기, 정박시키는 경우, 등불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경우
 - 16.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를 운항,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
 - 17. 소속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18. 미 승인 피로위험관리시스템 운용, 중요사항 변경
 - 19. 항공종사자, 객실승무원이 주류 영향으로 항공업무(객실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

항공기 등불

□오른쪽 날개 끝: 녹색등

□왼쪽 날개 끝 : 적색등

□ 항공기 꼬리 : 백색등

○비행 중 항공기 비행 방향 알림

○야간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주기할 때 항공기 존재를 알림

□동체; 상하(빨간 점멸, 매분 40~100회)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알려서 충돌을 회피

○충돌방지등(Anti-Collision Light, Beacon Light)



20. 제58조제2항(항공안전프로그램 등)을 위반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

가. 사업 시작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 못한 경우

나. 미 승인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용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내용과 다른 운용

라. 중요 사항을 승인 받지 않고 변경

21. 기장의 업무를 위반, 항공기사고, 준사고, 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미 보고

22. 자격인정, 심사 시, 소속 기장, 기장 외 조종사가 부당방법 사용

23. 운항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 요건 미 충족 기장이 운항

24.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

25.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수행 필요 교육훈련 없이 해당 업무에 종사

26. 이륙·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 착륙 한 경우

27. 제68조(비행 중 금지행위)위반, 해당비행(행위), 곡기, 최저고도, 급강하 등
28. 제70조제1항(위험물 운송 등)위반, 허가없이 항공기 이용, 위험물 운송
29. 제70조제3항(위험물취급)위반, 위험물취급 절차, 방법 미준수, 위험물 취급
30. 제72조제1항(위험물취급 교육)위반, 미 교육자 위험물취급
31. 제74조제1항(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 승인 받지 않고 비행기를 운항
32. 제75조제1항(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항공기 운항승인)위반, 미 승인 공역운항
33. 제76조제1항(승무원 탑승)위반, 운항안전에 필요한 승무원 미 탑승 운항
34. 제76조제3항 탑승 승무원에 대한 업무수행 필요 교육훈련 미수행

35. 제77조제2항(운항기술기준) 미 준수, 운항, 업무 수행
36. 제90조제1항(운항증명)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
37. 제90조제4항(운영기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8. 제90조제5항(안전운항체계 유지) 위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 미 검사 운항
39. 제90조제7항(정기검사, 수시검사) 위반,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취소)
40. 제93조제1항(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변경위반, 미 인가 운항규정(정비규정),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

41. 제93조2항, 본문 위반, 신고 없이 운항규정(정비규정) 변경
42. 제93조5항, 항공운송사업자 운항/정비규정 위반인가, 신고내용(운항,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미 제공
43. 제93조, 미 인가, 신고한 운항(정비규정) 미 준수 운항(정비)
44. 제94조, 항공운송 안전을 위한 명령 미 준수
45. 제132조, (항공안전활동수행) 미 보고, 서류 미 제출, 거짓보고 제출
46. 제132조2항(공무원) 항공기 출입, 장부서류검사(안전활동관련) 거부방해, 기피
47. 제132조2항(공무원)관계인 질문(항공안전활동 관련) 미 답변, 거짓 답변
48. 고의, 중대과실, 종사자 선임·감독 주의의무 소홀로 항공사고(준사고) 발생
49. 항공기 운항 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취소)

② 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 필요한 사항(국토부령)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① 운항증명 보유 항공운송사업자가 제91조제1항, 2호-38호, 제40호-48호(신체검사,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계기, 조종교육증명,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조종연습, 관제연습,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해당하여 운항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 운항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 심한 불편, 공익 해칠 우려 경우,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② 과징금 부과에 구체적 기준, 절차 및 필요사항 (대통령령)
- ③ 납부기한까지 과징금 미 납부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시작 전까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정비)규정을 마린 장관의 인가. 운항(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받을 수도 있음
- ② 인가 운항(정비)규정 변경: **신고**.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중요 변경: **인가**
- ③ 인가하려는 경우, 제77조제1항(운항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 ④ 인가의 경우 조건, 기한을 붙이거나 변경 가능. 다만, 조건, 기한은 공공 이익 증진이나 인가 시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의 것,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 부과는 아니됨
-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인가, 신고한 운항(정비)규정을 운항 및 정비업무 수행자에게 제공.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 운항, 정비업무 종사자는 운항(정비)규정을 준수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안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음

1. 항공기 및 그 밖의 시설의 개선
2.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방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